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가 입 자
자산관리기관

한국투자증권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에 거쳐 제공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 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리기관,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4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칭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일내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③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 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

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납입하기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을 회사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

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비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24년 4월 1일 개정 시행되는 별지의 제2조제2항제8호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해당 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20 년 월 일

가입자

인 / 서명

당 사 명판

직 인

[별지]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가 입 자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제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제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계산기준일 (사용자의 사업연도 초일 또는 계약응당일 중 사용자가 계약 시 선택한 날을 "계산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 호 및 제2 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단,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일별 신탁재산평가액	수수료율 (연)
전 구간	0.15%

- 제1 호 내지 제3 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2 차년도부터 4 차년도	10%
5 차년도부터 10 차년도	15%
11 차년도 이후	20%

- 제1 호 및 제3 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다.
- 제1 호 내지 제4 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합니다.
- 제 1 호부터 제 4 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사용자가

회사로 신청하고 회사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익영업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할인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각 할인의 인증(선정)이 만료,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선정)의 만료,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유예기간만큼 중소기업 할인을 유지합니다.

구분	기업우대 할인율
중소기업 ¹⁾	3%
강소기업 ²⁾	50%
사회적기업 ³⁾	60% 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강소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작지만 강한기업(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 7가지 기준을 적용)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기업우대할인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제1 호에서 제3 호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이 되게 설정합니다.

※ 참고: 기업우대 할인율은 중복적용 불가하며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

20 년 월 일

가입자

인 / 서명

당사명판

직인